



세무뉴스

2020년 1월

For reference only, not to be distributed, or sold

Contents

| | |
|---|----|
| 신규규정 | 4 |
| 2019 -2020 AHKFTA 관세율 공표 | 4 |
| 전기, 전자 및 가전 제품등이 속한 그룹 2 의 상품 목록 변경 | 4 |
| 산업무역부 관리 제품에 대한 HS 코드 상세 목록 추가..... | 5 |
| 지침문서 | 6 |
| 법인 소득세 ("CIT")..... | 6 |
| 자본 양도 소득..... | 6 |
| 사업파트너로부터 토지 임대료 징수 시 계산서 발행 | 6 |
| 아파트 관리 비용 | 6 |
| 수출가공기업의 계산서 사용..... | 7 |
| 판매 중단 생산시설에 대한 본사 세금신고 허용 | 7 |
|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서비스 | 7 |
| 임차인으로부터 전기 및 수도 요금 수금시 계산서 발행 | 7 |
| 자회사로 자산 이전 시 계산서 발행..... | 8 |
|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계산서 | 8 |
| 복지기금으로 투자된 스포츠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금지 | 8 |
| 개인 소득세 ("PIT")..... | 8 |
| 베트남 영토 외의 판매 수수료 PIT 면제 | 9 |
| 부양가족의 소득 확인서 제출 면제 | 9 |
| 수차례에 걸친 세금 확정 신고 수정..... | 9 |
| 전자세금계산서..... | 9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 9 |
| 자체 인쇄 계산서 2020 년 10 월 31 일까지 사용..... | 10 |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내역에 반드시 구매자와 판매자 서명이 필요 | 10 |
| 전자세금계산서 외 세부내역서 첨부 금지 | 10 |
| 부가가치세 ("VAT")..... | 10 |
| 보험회사의 은행 지원금에 대한 VAT | 10 |

| | |
|---|----|
| 지점으로부터 구직 활동비 수령시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행 | 11 |
|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VAT 세율 | 11 |
| 생명 보험 대리업무에 대한 보너스 및 재정지원금 | 11 |
| 그래픽 디자인 분야 VAT 공제 | 11 |
| 세관 & 수출입세 | 12 |
| 수출 가공업체 ("EPE")는 일반 기업으로 전환할 때 면세된 기계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함..... | 12 |
| 수입 라벨 정보 기록 규정..... | 12 |
| 결함제품 대체 목적 수입부품에 대한 관세..... | 13 |
| 수출입권을 수행한 EPE 에 대한 회계규정 | 13 |
| 국내 판매로 용도변경된 임시수입품의 경우 새롭게 수입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함. | 13 |
| 업체의 지점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자격이 없는 경우..... | 14 |
| FOB 기준 USD200 을 초과하지 않는 수입 제품에 대한 C/O 제출 면제 | 14 |

신규규정

2019 -2020 AHKFTA 관세율 공표

2020 년 01 월 05 일 베트남 정부는 중국, 홍콩- Asean (“AHKFTA”) 자유무역협정 실행을 위한 특별우대수입관세율을 규정하는 제 07/2020 / ND-CP 호 시행령을 공표하고 2020 년 02 월 20 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화에 대한 특별우대수입관세율 적용 요건 :

- 본 시행령 특별우대수입관세율 항목에 해당 하는 경우
- 중국,홍콩 및 아래 국가들을 포함한 ASEAN 자유 무역 협정 회원국에서 수입 되는 경우
 - a) 브루나이
 - b) 캄보디아
 - c) 인도네시아
 - d) 미얀마
 - e) 필리핀
 - f) 싱가포르
 - g) 태국
 - h) 중화 인민 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
 - i) 베트남(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비관세 지역의 상품 포함)
- 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
- 산업무역부 및 AHKFTA 협정의 규정에 따른 AHK 양식의 제품 원산지 증명서 (“C/O”)가 구비되고 제품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세율은 기간에 따라 4 가지로 구분된다.

- (i) 2019 년 6 월 11 일부터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 (ii)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 (iii) 2021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 (iv) 2022 년 1 월 1 일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전기, 전자 및 가전 제품등이 속한 그룹 2 의 상품 목록 변경

과학기술부는 2019 년 12 월 18 일 과학기술부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그룹 2 의 상품 및 제품에 관한 제 3810 / QD-BKHNCN 호 결정서를 발행했다.

기존 목록과 비교해 신규 목록은 그룹 2 에 품질 검사를 조건으로 일부 상품을 추가하고 동시에 품질 검사의 기준이 되는 일부 표준을 다음과 같이 수정, 대체하였다:

- 일반 목적으로 사용되는 LED (LED 전구, LED 튜브, LED 다운 라이트, LED 조명기구 세트 포함)는 QCVN 19:2019/BKHCHN 국가기준에 따라 2020 년 07 월 01 일부터 품질조사 등록, 적합성 인증서 등록, 품질 적합성을 표시해야 한다.
- 육류분쇄기, 계란거품기, 주서기, 과일 착즙기는 EMC QCVN 9: 2012 / BKHCHN 및 개정 1 : 2018 QCVN 9 : 2012 / BKHCHN 국가기준에 따른 전자파 적합성 인증서 등록, 품질 적합성을 표시해야 한다.
- QCVN 3 : 2019 / BKHCHN 에 따른 장난감 안전성에 관한 새로운 기술적 요구사항 실행;
- 과학 기술부의 제품에 적용되는 기타 새로운 표준 소개

본 결정서는 2019 년 12 월 18 일부터 유효하다.

산업무역부 관리 제품에 대한 HS 코드 상세 목록 추가

2019 년 12 월 16 일 산업 무역부는 여러 시행규칙에서 언급된 수출 및 수입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HS 코드 목록을 포함한 No. 41 / 2019 / TT-BCT 의 시행령을 발표했다. 수정 및 추가된 목록은 아래와 같다:

- (i) 제 30/2018/TT-BCT (부록 I)호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출용 쌀
- (ii) 제 10/2011 / TT-BCT (부록 II)호 시행규칙에 규정된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Essential 오일 공급
- (iii) 제 14/2009 / TTLT-BCT-BTC (부록 III)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다이아몬드 원석
- (iv) 제 38/2014 / TT-BCT 호 시행규칙 부록 IV 에 규정된 휘발유 및 오일
- (v) 제 12/2016/TT-BCT 호 시행규칙 부록 1 (부록 V)에 규정된 수출용 광산물
- (vi) 제 57/2018 / TT-BCT (부록 VI)호 시행규칙에 규정된 담배 원재료, 담배 종이
- (vii) 제 57 / 2018 / TT-BCT 호 시행규칙 부록 72 (부록 VII)에 규정된 담배제조용 기계 및 장비
- (viii) 제 15 / 2013 / TT-BCT 호 시행규칙 부록 1 (부록 VIII)에 규정된 수출용 석탄

이 시행령은 2020 년 1 월 29 일부터 유효하다.

지침문서

법인 소득세 ("CIT")

자본 양도 소득

2019년 12월 31일 하노이 국세청은 자본 양도 소득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환율에 대한 제 98064 / CT-TTHT 호 Official Letter(OL)를 발행했다.

구체적으로, 제 78/2014 / TT-BTC 호 시행규칙 제 14 조에 따라 자본 양도자 및 인수자 모두 해외에 소재하는 기업인 경우, 자본 양도거래 대상인 베트남 회사가 이들을 대신에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자본 양도 과세소득은 자본 양도가격에서 자본 인수가격과 양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00% 외국 투자기업의 경우 자본 인수가격은 자본 납입시점에 회계장부, 회계서류, 투자확인서 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등을 근거로 하는 금액의 합계로 하며 투자 증명서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제 96/2015 / TT-BTC 의 시행규칙 제 8 조).

외화를 베트남 동으로 환산시 적용하는 환율은 제 26/2015 / TT-BTC 호 시행규칙 제 2 조 , 4 항의 지침에 따른다

사업파트너로부터 토지 임대료 징수 시 계산서 발행

2019년 12월 30일 하노이 국세청은 토지 임대료에 대한 조세정책을 안내하는 제 97435 / CT-TTHT 호 OL(Official Letter)를 발표했다.

회사가 다른 사업자들과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납입 자본금 비율에 따라 총당금 설정, 제품 및 토지 사용권을 가지는 경우, 추가적인 토지 사용료 및 비 농업용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각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 임대료 결산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토지 임대료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 비용

2019년 12월 30일, 하노이 국세청은 아파트 관리 수수료에 대한 VAT 규정을 포함하는 제 97454 / CT-TTHT 호 OL 를 발행했다.

아파트 관리 수수료는 VAT 부과대상이다. 계약을 체결한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아파트 관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고 VAT 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 수수료에 VAT 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협의 및 계약에 따른다.

수출가공기업의 계산서 사용

2019년 12월 30일 하노이 국세청은 수출가공기업 ("EPE")의 계산서 사용에 대한 제 97491 / CT-TTHT 의 호 OL 를 발행했다.

제 119/2014 / TT-BTC 호 OL 의 제 5 조 , 1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EPE 가 다른 EPE 에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공급 하는 경우 "비관세구역에 조직 및 개인용" (제 119 / 2014 / TT-BTC 호 시행규칙에 첨부된 부록 5, 제 5.3 호 양식)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된 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판매 중단 생산시설에 대한 본사 세금신고 허용

2020년 01월 06일 하노이 국세청은 판매 중단 생산시설에 대한 조세정책 시행을 안내하는 제 329 / CT-TTHT 호 OL 를 발행했다.

다른 성에 위치한 지점이 독립적인 회계결산이나 판매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생산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본사에서 지점의 VAT 를 신고해야 하며, 제 156 / 2013 / TT-BTC 호 시행규칙 제 2 조 1 항 d 점에 따라 2 % 또는 1 %의 금액을 지점이 소재한 지역에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배분한다.

법인세의 경우 회사는 생산시설에서 발생한 소득과 비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본사와 생산 시설이 소재한 지역에서 납부할 세금을 제 78/2014 / TT-BTC 호 시행규칙 제 12 조의 지침에 따라 배분한다.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서비스

2019년 12월 11일 하노이 국세청은 서비스제공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안내하는 제 92387 / CT-TTHT 호 OL 를 발행했다.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 서비스는 제 71 / 2007 / ND-CP 호 시행령에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제 219/2013 / TT-BTC 호 시행규칙 제 4 조 7 항; 제 14 조).

계산서 발행시점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 혹은 용역비 수취시점으로 한다. (제 39/2014 / TT-BTC 호 시행령, 제 16 조 ,2 항).

임차인으로부터 전기 및 수도 요금 수금시 계산서 발행

2020년 01월 06일 하노이 국세청은 임차인으로부터 전기 및 수도 요금 수금시 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 419 / CT-THTT 호 OL 를 발행했다.

회사가 전기 및 수도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건물에서 소비한 전기 및 수도 요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전기 및 수도 요금 수금시 회사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자회사로 자산 이전 시 계산서 발행

2019년 12월 12일 하노이 국세청은 자회사로 자산 이전 하는 경우의 계산서 발행에 관한 제 92945 / CT-TTHT 호 OL 를 발행했다.

제 219 / 2013 / TT-BTC 호 시행령 제 5 조 6 항에 근거하여 모회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 사업 활동을 위해 자회사로 신규 고정자산을 장부상 가치로 이전할 경우 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가 면제된다. 다만, 자회사의 고정자산 인식을 위한 자산 이전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회사가 자회사로 이전하기 전에 고정자산을 재평가 하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 활동을 위해 자회사로 고정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투자 단계에 발생한 이자비용으로써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자본화 된 경우, 이러한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96 / 2015 / TT-BTC 호 시행령 제 4 조 2.17, 2.18, 2.31 항).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계산서

2019년 12월 16일 하노이 국세청은 아파트 관리비 계산서에 대한 제 93847 / CT-TTHT 호 OL 를 발행했다.

회사가 건물소유주와 아파트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회사가 전기, 수도 요금 및 기타 관리 비용을 부담하지만 해당세금계산서가 건물소유주 앞으로 발행된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는 전기 및 수도 요금과 관련해서는 제 96/2015 / TT-BTC 호 시행규칙, 제 4 조 2.15 항을 따라야 한다.

복지기금으로 투자된 스포츠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금지

2019년 12월 18일 세무총국은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복지기금으로 구매한 고정자산과 관련 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조세정책 제 5305 / TCT-DNL 호 OL 를 발행했다.

제 200/2014/TT-BTC 호 시행규칙 제 34 조 2 항, 제 63 조 1 항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복지 및 문화생활 목적으로 복지기금으로 구매한 고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신 복지기금에서 차감처리 된다.

회사가 복지자금으로 직원을 위한 건물 운동시설에 투자한 경우 이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 소득세 ("PIT")

베트남 영토 외의 판매 수수료 PIT 면제

2019년 09월 13일 호치민 국세청은 외국 중개 서비스에 대한 PIT를 규정하는 제 10149 / CT-TTHT 호 OL를 발행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해외에서 베트남 기업에 판매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베트남 영토밖에서 발생한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PIT가 면제된다.

부양가족의 소득 확인서 제출 면제

2020년 01월 06일 하노이 국세청은 부양 가족 공제 신청 서류에 대한 제 330 / CT-TTHT 호 OL를 발행했다.

부양가족 소득 확인서 (월간 백만동이하)등을 포함한 부양가족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신고한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납세자 부양가족 신청 대상이 본인의 부모인 경우 양육의무 대상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차례에 걸친 세금 확정 신고 수정

2019년 12월 16일 세무총국은 납부지연 가산세 조정에 관한 제 5247 / TCT-QLN 호 OL를 발행했다.

회사가 PIT 확정신고를 2차 수정신고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 납부지연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회사가 세무조사 결정을 통보받기 전에 3차 수정신고를 하고 이에따라 납부해야할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수정된 금액에 따라 재 계산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2019년 12월 27일 하노이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에 관한 제 96741 / CT-TTHT 호 OL를 발행했다.

제 32 / 2011 / TT-BTC 호 시행규칙 제 4조 2항, 제 7조 1항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다. 회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제 32 / 2011 / TT-BTC 호 시행령 제 7조 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통지를 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제 39/2014/TT-BTC 호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한 일자부터 조세당국에서 구해진 종이계산서 사용을 중단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종이계산서는 파기해야 한다. 회사는 종이계산서 사용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월의 첫째날부터 종이계산서 사용을 중단한 날까지 기간에 대한 종이계산서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제 39/2014/TT-BTC 호 시행규칙

제 27 조 규정에 따라 종이계산서 사용을 중단한 다음월부터 계산서 사용 내역을 조세당국에 분기별로 제출한다.

자체 인쇄 계산서 2020 년 10 월 31 일까지 사용

2019 년 12 월 27 일 하노이 국세청은 자체 인쇄 계산서 사용에 관한 제 96977 / CT-TTHT 호 OL 를 발행했다.

제 68 / 2019 / TT-BTC 호 시행령 제 27 조 2 항 규정에 따라 2018/11/01 부터 2020/10/31 까지는 회사가 조세당국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요청받지 않은 경우, 자체 인쇄 종이 계산서를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2020/11/0 부터는 자체 인쇄 계산서 사용을 중단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내역에 반드시 구매자와 판매자 서명이 필요

2019 년 12 월 30 일 하노이 국세청은 전자계산서 조정에 관한 제 97492 / CT-TTHT 호 OL 를 발행했다.

회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못 발행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하지 않았거나 혹은 회사가 이와 관련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잘 못 발행된 계산서의 수정은 제 32 / 2011 / TT / BTC 호 시행령 제 9 조 , 1 항에 따라 진행된다.

회사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전달했고, 모든 관련자들이 이와 관련된 세금을 신고한 경우 잘못된 계산서는 제 32 / 2011 / TT-BTC 호 시행령 제 9 조 2 항에 따라 처리된다

구매자의 전자 서명이 없는 경우, 계산서 수정내역을 문서로 작성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서명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외 세부내역서 첨부 금지

2019 년 12 월 30 일 하노이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에 관한 제 97494 / CT-TTHT 호 OL 를 발행했다.

2019/05/22 세무총국의 제 2047 / TCT-CS 호 OL 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자 데이터 서신의 모음으로 계산서상 기입내용에 제한이 없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외 별도의 세부내역서 첨부가 허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VAT")

보험회사의 은행 지원금에 대한 VAT

2019년 12월 26일 하노이 국세청은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원금의 VAT에 대한 제 96643 / CT-TTHT 호 OL를 발행했다.

보험회사가 은행과 보험 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보험사로 부터 서비스 (광고, 마케팅등)를 위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 VAT 10%가 부과된다.

은행이 보험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다. 다만, 은행은 수령한 금액에 대해 수금 증빙을 발행한다.

지점으로부터 구직 활동비 수령시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행

2019년 12월 30일 하노이 국세청은 재정수입으로 인한 VAT 신고에 관한 제 97636 / CT-TTHT 호 OL를 발행했다.

회사가 지점들을 위해 구직 활동을 진행하고 지점으로 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회사는 재무부의 2015/02/27 일자 제 26 / 2015 / TT-BTC 호 시행령 제 3 조, 7 항 A 규정 및 2013/12/31 일자 제 219 / 2013 / TT-BTC 호 시행령 제 11 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하고 1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 신고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VAT 세율

2020년 01월 06일 하노이 국세청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VAT에 관한 제 332 / CT-TTHT 호 OL를 발행했다.

제 219/2013 / TT-BTC 호 시행규칙 제 4 조 21 항 규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그러나 VAT 면제는 제 71 / 2007 / ND-CP 호 시행령 제 9 조에 규정을 충족한 소프트웨어 서비스에만 적용되며 제 9 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경우 VAT 10%가 부과된다.

생명 보험 대리업무에 대한 보너스 및 재정지원금

2019년 12월 16일 하노이 국세청은 생명 보험 대리업무에 지급한 보너스 및 재정 지원금에 대한 VAT 정책을 안내하는 제 96644 / CT-TTHT 호 OL를 발행했다.

보험 회사가 광고, 판매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보험 대리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VAT 10%가 부과된다. 그러나 보험 대리점이 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재정지원금은 VAT 신고 및 납부 대상이 아니다.

그래픽 디자인 분야 VAT 공제

2019년 12월 19일 하노이 국세청은 그래픽 디자인 분야 기업의 VAT 공제에 관한 제 93729 / CT-TTHT 호 OL를 발행했다.

회사는 제 219/2013 / TT-BTC 호 시행령 제 4 조에 근거하여 당사의 사업활동이 VAT 대상인지 검토하고 만약 VAT 면제 대상일 경우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회사가 VAT 10%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제 219/2013 / TT-BTC 호 시행령 제 15 조 규정을 충족하면 관련된 매입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하다.

회사가 수출 활동을 수행할 경우 제 219 / 2013 / TT-BTC 호 시행규칙 제 6 조와 17 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세관 & 수출입세

수출 가공업체 ("EPE")는 일반 기업으로 전환할 때 면세된 기계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함.

2019 년 12 월 27 일 관세총국은 기업 유형 전환에 관한 제 8004 / TCHQ-TXNK 호 OL 를 발행했다.

회사가 EPE 사업을 위해 기계 및 장비를 면세로 수입한 후에 일반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롭게 관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동시에 최초 관세 신고 시점에 수입제품 관리 정책을 완전하게 실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롭게 세관 신고를 하는 시점에 해당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회사가 EPE 에서 일반기업 유형 전환을 관리위원회로 부터 승인 받지 못한 경우 국내기업과 거래 시 2018/4/20 일자 제 39/2018 / TT-BTC 호 시행규칙 제 75 조 2 항 규정 (재무부의 2018/04/20 일자, No. 38 / 2015 / TT-BTC 의 시행령에서 수정, 보충)에 따라 수출입 관세절차를 수행 해야 한다.

수입 라벨 정보 기록 규정

2019 년 12 월 27 일 과학기술부 산하 품질계량표준총국은 라벨 규정을 위반한 수입품 처리에 관한 제 424 / TĐC-QLCL 호 OL 를 발행했다.

제 43 / 2017 / ND-CP 호 시행령 제 7 조 3 항 및 제 9 조 4 항 규정에 따르면 라벨이 표시되지 않거나 original 라벨에 필수 내용을 베트남어로 충분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서브 레이블 (Sub Label) 을 부착해야하는 시점은 "유통을 시킬 때" 이다.

제 43 / 2017 / ND-CP 호 시행령 제 7 조 3 항에 따르면 "상품 유통은 판매를 위해 상품을 전시, 판촉, 운송 및 보관하는 것을 말하며, 수입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국경에서 창고로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따라서, 국경 관문소에 있는 상품 라벨에 필수적인 내용이 베트남어로 충분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라벨링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수입자(개인이나 기관)은 제품 유통 전 베트남어로 된 서브레이블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링에 대한 행정 제제 규정 외에 제 119/2017/NĐ-CP 호 시행령 제 31 조 1 항에 세관 통관 시 서브레이블이 없는 수입 제품에 대해 제제는 제외한다.

결함제품 대체 목적 수입부품에 대한 관세

2020 년 1 월 2 일 세무총국은 결함제품 대체를 위해 수입 된 부품에 대한 관세 및 관세 부과대상액에 관한 제 13 / TCHQ-TXNK 호 OL 를 발행했다.

제 107 / 2016 / QH13 호 수출입 세법 제 2 조 규정에 따라 결함제품 대체를 위해 외국 파트너가 제공한 물품은 관세 과세 대상이다. 상업송장/ 매매계약서가 없을 경우 관세 부과 대상액은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수출입권을 수행한 EPE 에 대한 회계규정

2019 년 12 월 16 일 세무총국은 수출입권을 수행한 EPE 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회계 규정에 관한 제 5252 / TCT-CS 호 OL 를 발행했다.

구체적으로 수출입권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EPE 기업들의 경우 베트남내 매출액과 관련 비용을 수출활동과 별개로 회계처리 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출입 활동에 대한 VAT 계산은 제 93/2017/TT-BTC 호 시행규칙 제 1 조에 따른다. 수출입 및 유통 활 동 매출시 발행되는 계산서는 제 119/2014/TT-BTC 호 시행규칙 및 제 39/2014/TT-BTC 호 시행규칙 제 5 조를 따른다.

국내 판매로 용도변경된 임시수입품의 경우 새롭게 수입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함.

020/01/02 일자 관세총국은 임시로 수입된 기계 및 장비의 국내판매 용도 변경에 대한 제 07/TCHQ-TXNK 호 OL 을 발행했다. 따라서 :

- **관세신고 유형:** 회사는 임시로 수입되어 국내판매로 전환된 상품에 대해 A21 수입코드로 신고하고 이외 국내판매로 전환한 상품의 경우 A42 수입코드로 신고한다.
- **통관절차:** 회사는 제 08/2015/NĐ-CP 호 시행령 제 25 조 5 항 규정을 수정 보완하는 제 59/2018/NĐ-CP 호 시행령 제 1 조 12 항 규정 및 제 38/2015 / TT-BTC 호 시행규칙 제 21 조를 수정보완 하는 제 39 / 2018 / TT-BTC 호 시행규칙 제 1 조 10 항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 **관세정책:** 수출상품 생산 목적으로 수입된 제품, 원자재 및 재수출 목적으로 임시 수입된 제품이 국내 소비로 사용목적이 변경될 경우 새롭게 관세 신고를 해야 한다. 수출입 제품에 대한 관세정책, 조세관리 정책은 최초 통관시점에 완료된 경우를 제외하면 새롭게 관세신고서를 신청하는 시점에 적용된다. 기업이 외국 파트너로 부터 임대하여 수입한 제품을 소유권 이전을 통해 국내 소비에 사용한 경우 규정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관세 부가가격:** 실제 판매 가격을 근거로 신고한 금액이다. 관세기관에서 신고된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할 경우, 규정에 따라 관세 부가가격을 확정한다.

업체의 지점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자격이 없는 경우

2019년 12월 25일 관세청은 AEO 적용 조건에 대한 No. 7963 / TCHQ-KTSTQ 의 OL 을 발행했다. 지점이 기업에 속한 단위이며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의 지점은 AEO 혜택제도를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FOB 기준 USD200 을 초과하지 않는 수입 제품에 대한 C/O 제출 면제

2019년 12월 18일 호치민 국세청은 C/O 제출 면제 수입 제품에 대한 제 3724 / HQHCM-GSQL 호 OL 을 발행했다.

제 3724/HQHCM-GSQL 호 OL; 제 22/2016/TT-BCT 호 시행규칙 제 15 조 , VII 부록 및 제 12/2019/TT-BCT 조 시행규칙 제 25 조 규정에 근거하여 ASEAN 국가 및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FOB 가격이 USD 200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C/O (양식 D 및 양식 E) 제출이 면제된다.

상기 규정은 우편으로 수입된 재화에도 적용된다.

* * * * *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Contact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Website: 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affili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 Legal and related services. Our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sation”)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312,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 Chi Minh City,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Tokyo and Yangon.

About Deloitte Vietnam

Deloitte Vietnam, a pioneer in the Advisory and Audit industry with over 28 years of experience in the Vietnam market, is part of the Deloitte Global network, one of the Four largest professional services organisations in the world. Our clients are served by over 1,000 staff located in our Hanoi and Ho Chi Minh City offices with access to the full strength of our Deloitte Asia Pacific member firms. Through our extensive network, Deloitte Vietnam delivers value-added services in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 Legal, Consulting, Audit & Assurance and Professional Training Services to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cross a wide range of industri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By reading this without any of response to Deloitte, we hereby assume that you agree with all the information and provisions set forth above.